



행정 지침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2012. 10. 5

기 계 항 공 공 학 부

II. 인 사 및 업 적 평 가	1
II-1. 우수 강의 및 우수 연구 교수상 추천 지침	1
II-2. 연구년 교수 추천 지침	2
III. 교 육	3
III-1. 다강좌 교과목 개설 지침	3
III-2. TA 운영 지침	4
VI. 학 생	6
V-1. 장학금 관리 지침	6
V-1. 학사과정 지도교수 선정 및 상담 지침	9
V-1. 교외 수업 (MT)에 관한 지침	11

II. 인 사 및 업 적 평 가

II-1. 우수 강의 및 우수 연구 교수상 추천 지침

제정 2004.01.01.

개정 2012.10.05.

제 1조 (목적)

본 지침은 전임 교수의 우수 강의 및 우수 연구 포상 추천에 관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우수 강의 교수상)

1. 대상 : 평가시점 현재 기계항공공학부에 소속된 현직 전임 교수를 대상으로 한다.
2. 평가방식 : 강의 내역, 강의 개발 실적, 강의 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인사업적평가위원회에서 포상을 추천한다.

제3조 (우수 연구 교수상)

1. 대상 : 평가시점 현재 기계항공공학부에 소속된 현직 전임 교수를 대상으로 한다.
2. 평가방식 :
 - ① 전년도 SCI(E) 출판확정(온라인 출판 제외) 논문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 ② 평가대상 논문은 서울대 연구행정시스템(OS) 입력자료를 집계해 정리한다.
 - ③ 논문건수 계산 시 학부 내 공저교수가 있을 경우 1/n건으로 계산한다.
 - ④ 학술지 편집경력, 학술대회 초청강연 등을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11-2. 연구년 교수 추천 지침

제정 2004.01.01.

개정 2012.10.05.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학부 교수들의 연구년 추천 순위의 기준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추천 점수 산정)

1. 추천 순위는 점수화하여 정한다.
2. 점수는 학교 규정에 따라 최근 연구년 교수를 종료한 시점(연구년 경력이 없는 경우는 임용시점)에서 현재 경과한 개월 수에서 72개월(1년 연구년 교수 기준) 또는 36개월(6개월 연구년 교수 기준)을 뺀 개월 수를 기준 점수로 한다.
3. 임용 후 연구년을 가진 기회가 적은 교수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연구년 교수 회수 -1) x 2개월을 2조 2항에서 결정된 기준 점수에서 감한다. 이때 6개월 연구년과 12개월 연구년은 동일하게 1회로 간주한다.
4. 2조 2항과 3항에서 결정된 점수는 교수의 연구년 의사와 관계없이 학부의 전 교수에 대해 매년 5월 첫째 주에 계산되어지며, 그 순위표를 전 교수들에게 알려서 각 교수가 연구년 교수의 순위를 미리 알 수 있도록 한다.
5. 연구년을 신청하고자 하는 교수는 2조 4항에서 주어진 순위표를 참고하여 6개월 또는 12개월을 명시한 신청서를 5월 셋째 주까지 학부에 제출한다.
6. 인사업적평가위원회는 5월 넷째 주에 제출된 신청서를 근거로 하여 연구년 최종 순위를 결정한다.
 - ① 6개월 기간의 연구년을 신청한 교수에게는 36개월에 해당하는 점수 2조 2항과 3항에서 결정된 점수에 더한 점수를 최종점수로 한다.
 - ② 인사업적평가위원회에서는 교수의 학부 기여도, 학부 정책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최종점수에 가감을 할 수 있다.

III. 교 육

III-1. 다강좌 교과목 개설 지침

제정 2010.09.07.

개정 2012.10.05.

제 1조 (목적)

본 지침은 다강좌 교과목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 2조 (운영)

전공 교과목은 이전 3년 평균 전체 수강 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분반할 수 있다.

1. 다강좌 교과목의 경우 001강좌의 교수를 책임교수로 지정한다.
2. 다강좌 교과목의 경우 책임교수가 교과목에 대한 기본 운영 방침(교재, 수강인원, 성적 평가방법 등)을 결정하여 학기 시작 일주일 전까지 교무위원회에 보고한다.

III-2. TA 운영 지침

제정 2003.03.
개정 2006.09.
개정 2008.02.
개정 2009.08.
개정 2010.10.
개정 2012.10.05.

제1조 (모집)

1. TA는 매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지원을 받아 교과목 수강생 50명마다 1명 이상을 배정하여, (1명 기본배정, 전년도 수강인원 대비) 원칙적으로 총 50명 내외의 TA를 선발한다.
2. TA는 학부 내규 필수과목을 포함한 전공필수 과목 및 대형 강좌에 대하여 모집을 한다.
3. 교과목 담당교수의 추천으로 1, 2지망을 통하여 지원 교과목을 정하되 지원 교과목을 중심으로 학부 교과과정위원회에서 인원을 선정한다.

제2조 (TA의 자격)

TA는 석, 박사 과정에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1학기로 하되 다음 학기에 재 지원할 수 있다.

제3조 (TA의 업무)

1. 매 학기 시작 1주일 전 교과목 담당 교수와 수업에 관련된 업무에 대해 의논, 지시사항을 전달 받는다.
2. 담당과목에 대한 연습문제 풀이를 지원하고 상담시간을 운영한다.
3. 과제 선정, 공고 및 수합, 시험 감독 및 채점을 지원한다.
4. 기타 강의에 관련된 업무를 지원한다.
(빔 프로젝터 등 강의시설, 강의 홈페이지 관리 등)

제4조 (운영)

1. TA의 계약기간은 1학기로 하며(1학기: 3-6월, 2학기: 9-12월), 매달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한다.
2. 교무위원회에서 교수의 추천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TA를 선발한다.
3. TA는 수업과 관련하여 담당교수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으며 교과목 담당교수의 요청이 있을 시 학기 중이라도 교무위원회에서 해당 TA를 교체할 수 있다.

IV. 학 생

IV-1. 장학금 관리지침

제정 2012.10.05.

제 1조 (목적)

본 지침은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의 장학생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대상 및 기준)

각 장학금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학생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한다.

1. 국가유공자 장학생

- ① 대상: 학사과정 재학생으로 독립유공자 (손)자녀, 국가유공자 자녀
- ② 선발기준: 직전학기 평점평균 1.70이상
- ③ 장학금: 등록금 전액

2. 기초수급권자 장학생

- ① 대상: 학사과정 재학생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본인
- ② 선발기준: 직전학기 평점평균 2.40이상
- ③ 장학금: 등록금 전액

3. 성적우등 장학생

- ① 대상: 1개 학기 이상 이수한 학사과정 학생
- ② 선발기준: 학부에 배정된 인원 내에서 전체 학년 평점평균 3.6 이상
- ③ 장학금: 등록금 전액

4. 맞춤형 장학생

- ① 대상: 학사과정생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 ② 선발기준: 직전학기 평점평균 2.4 이상
- ③ 장학금: 매학기 학부에 배정된 장학금을 고려하여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5. 강의연구지원장학생

- ① 대상: 지도교수 추천을 받은 대학원생 (전임교수당 1명)
- ② 선발기준: 직전학기 평점평균 3.3 이상(신입생, 연구생은 성적기준 예외)
- ③ 장학금 - 재학생 : 박사과정(등록금 전액 면제 + 월 30만원)
석사과정(등록금 전액 면제 + 월 20만원)
- 연구생 : 박사과정(월 90만원), 석사과정(월 50만원)

6. 수업료 일부면제 장학생(학부)

- ① 대상: 학사과정 재학생
- ② 선발기준: 학부 배정 인원 내에서 직전학기 평점평균 2.7 이상
- ③ 장학금: 수업료 일부

7. 수업료면제 장학생(대학원)

- ① 대상: 대학원과정 재학생
- ② 선발기준: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직전학기 평점평균 3.3 이상(신입생은 성적기준 예외)
- ③ 장학금: 수업료 일부

8. 유학 장학생

- ① 대상: 학사과정 및 대학원과정 재학생으로 정원의 외국인특별전형(외국인), 정원의(영주자), 외국인 편입학한 학생
- ② 선발기준: 학부에 배정된 인원 내에서 직전학기 평점평균 학사과정 2.7 이상, 대학원과정 3.0 이상
- ③ 장학금: 수업료 일부

9. 근로 장학생

매학기 학부에 배정된 근로장학생 수를 업무량을 고려하여 배정

구 분	선 발 방 법	배 정 인 원
전산동아리(MACCA)	지도교수 추천	10인 이내
학부도서실	지원자 중 업무능력이 탁월한 자 순	2인 이내

10. 교외 장학생

- ① 대상: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
- ② 선발기준: 장학금을 출연한 개인 및 장학재단의 자체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되, 그렇지 않은 경우 직전학기 및 전체평점을 고려하여 선정
- ③ 장학금: 지원기관별 상이함

제 3조 (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은 학생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멘토로서 활동할 의무가 있다.

IV-2. 학사과정 지도교수 선정 및 상담 지침

제정 2012.10.05.

제 1조 (목적) 본 지침은 기계항공공학부 지도교수의 선정 및 상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지도교수의 선정)

1. 학사과정의 지도교수 선정 시기는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한다.
2. 지도교수의 자격은 기계항공공학부의 교원이어야 한다.
3. 지도교수 선정을 위한 조편성은 기계항공공학부 학생회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모든 학내 행사에 편성을 나눌 때 활용한다.
4. 지도교수의 선정은 학부의 업무 및 배정학생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생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5. 선정된 지도교수 명단은 종합행정정보시스템의 학생관리 부분에 입력한다.

제 3조 (지도교수와의 상담)

1. 학부생들의 전공학습, 진로선택, 인간관계 등에 관하여 지도교수와 정기적인 상담을 의무화한다.
2. 지도교수와의 정기상담은 매학기에 한다.
3. 지도교수의 해외파견, 휴직 등의 사유로 상담이 불가능할시 학생위원장은 임시지도교수를 지정하여 통보한다.
4. 지도교수와의 상담을 담당하는 조교는 각 지도교수의 상담일정 및 상담방법을 학부생들에게 공지한다.
5. 정기적인 상담 외 지도교수의 상담이 필요할시 수시적인 상담을 진행한다.
6. 상담이후 기계항공공학부 홈페이지에 지도교수 면담 내용을 입력한다.

제 4조 (학사경고자에 대한 관리)

1. 직전학기 학사경고자의 경우 해당 지도교수에게 통보하여 반드시 수강신청 전 지도교수와 면담하도록 한다. 본인이 원할 때, 멘토-멘티 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2. 면담이 성사되지 않은 학생은 학부사무실에서 학부모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여, 학사 경고 사실을 통보하고, 학업 계획에 대하여 상담한다.

제 5조 (외국인 학생에 대한 학사 관리)

1. 외국인 학생을 전담하는 지도교수를 학부장이 별도로 지정한다.
2. 외국인 전담 지도교수는 매학기 초에 외국인 학생들에 대한 개별상담 및 집단모임을 통하여 외국인 학생들의 학업 및 생활의 애로점을 상담하고, 외국인 학생들이 자치적으로 모임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모임을 Off-/On-line 상에 마련한다.
3. 학업이 부진한 외국인 학생들을 위하여 멘토-멘티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이때 멘토는 장학금을 수여받은 학생들 중에서 선발한다.

IV-3. 교외수업(MT)에 관한 지침

제정 2012.10.05.

제 1조 (목적) 본 지침은 기계항공공학부 학사과정 학생들의 교외수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교외수업의 정의 및 예산)

1. 학사과정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외수업은 학생들의 산업체 견학 및 소속감 고취를 위하여 학교를 벗어난 장소에서 진행된다.
2. 필요한 경비는 학부에서 예산으로 지원하되 자치활동을 위한 경비는 학생들 자체적으로 해결한다.

제 3조 (준비위원회 구성 및 역할)

1. 교외수업은 원칙적으로 학생회를 중심으로 준비한다. 행정적인 지원 및 교육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준비위원회는 학생회 임원, 학생위원회 소속 교수, 관련 업무 담당 직원들로 행사 3개월 전에 구성한다.
2. 수업의 장소 및 섭외는 준비위원회에서 매년 수업의 주제에 따라 결정하고 추진한다.
3. 행사는 원칙적으로 학생회를 중심으로 진행하되, 견학 등의 교육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준비위원회에서 사전에 협의한다.
4. 차량, 숙박, 행사 장소 섭외와 같은 행정적인 사항은 담당 직원이 담당한다.

제 4조 (보고서 작성)

1. 교외수업을 마치고 1개월 이내에 결산을 포함한 행사 보고서를 준비위원회에서 작성한다.
2. 보고서는 차년도 행사준비에 활용한다.